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복은 학부모 경비 부담 항목 중 하나로서, 정보부족, 브랜드 업체의 마케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개별구매 비중이 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 2015년부터 교복 구매에 대해 학교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학교 주관 구매”가 시행되는 등 교복 구매제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복구매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복 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학생은 품질 좋은 교복 착용을, 더 나아가 교복가격은 안정화를 이루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학교의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 등에 대해 자문·권고함(안 제5조)
- 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교복 구매업무를 담당하거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6조)
- 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 마.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을 지원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국·공립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학교 주관 구매”란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주관하여 진행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북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북구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권고한다.

1. 교북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북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교북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북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북 구매와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북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북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북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고등학교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류나 섬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 세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 초·중등교육법 ○ 제8조(학교 규칙) ○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32조(기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제목개정 2011.3.1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의 교복 구매를 지원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에게는 품질 좋은 교복 착용, 더 나아가 교복가격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여부는 교복구매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계획 등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교복구매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계획 등에 따라 예산지원이 달라져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교육위원회 이 강 호 의원